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995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8일  
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윤기섭 의원 외 27명

나. 제출일자 : 2025년 8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3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25년 9월 8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윤기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‘공사시행자’로만 규정하고 있어, 발주처(예: 특수목적법인)와 시공사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.
-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, 교통소통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시공사에도 명확히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- 이번 개정안에서는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,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, 실제 이행 의무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부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.
-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.

## 나. 주요골자

-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. (안 제2조제4항과 같은조제5항 신설)
-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1항, 제5조, 제7조)

- “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9조제8항)
-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1항)
- “공사시행자”와 “정당한”을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주체가 정당한”으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2항)
- “공사시행자에게”와 “공사시행자가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”로 변경함. (안 제11조제1항)
- “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1조제2항 신설)
- “공사를 시행한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3조제1항과 같은조제2항)
-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4조의 제목과 제1항)
-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4조제3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08. 20. ~ 2025. 08. 24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<sup>1)</sup>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조례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시 기존 조례의 ‘공사시행자’를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, 향후 교통소통대책 미이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,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함

---

1) 교통운영과-12466호(2025. 8. 26.) 제33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공사시행자<sup>2)</sup>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자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해석상 혼란 등이 있는 바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이행주체”로 구분하여 각 사안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의무 준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■ “사업시행자” 및 “이행 주체” 정의 신설 관련(안 제2조)

-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공사시행자” 또는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라는 표현은 현행 조례 제3조<sup>3)</sup>에 따른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는 주체인지 혹은 실제 교통소통대책을 시행하는 주체인지에 대한 조례 해석상의 모호성이 존재하고, 교통소통대책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특정하는데 혼동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을 시

---

2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 
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, 그 점용기간이 20일(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)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. 1. 도로의 신설·개설·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. 지하철건설 및 유지·보수 공사 3. 상·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. 전력 및 통신공사 5.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

행하는자와 교통소통대책을 실제 이행하는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

- 따라서, 동 조례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“공사시행자”라는 용어를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이행주체”(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자)로 구분하여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공사장 관련 교통소통대책 이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이행주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■ 교통소통대책 수립 등, 시장조치,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련(안 제4조, 제10조·제11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기존에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개정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·제출 등의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

동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임

- 특히,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이행주체의 교통소통대책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## ■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관련(안 제14조제3항)

-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이행주체에게 현행 조례 제10조4)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,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 11조5)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 
- 동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를 구분하여 사안별 교통소통대책 의무 준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공사장 인근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 증진과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--

4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시장의 조치)

① 시장은 「도로법」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.

5)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

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기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9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윤기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 
김경훈, 김영옥, 김영철,  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 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 
서상열, 유정인, 운영희,  
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  
이원형, 이종태, 정준호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‘공사시행자’로만 규정하고 있어, 발주처(예: 특수목적법인)와 시공사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.
-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, 교통소통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시공사에도 명확히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- 이번 개정안에서는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,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, 실제 이행 의무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부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.
-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. (안 제2조제4항과 같은조제5항 신설)
- 나.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1항, 제5조, 제7조)
- 다. “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9조제8항)
- 라.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1항)
- 마. “공사시행자”와 “정당한”을 “사업시행자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”으로 변경함. (안 제10조제2항)
- 바. “공사시행자에게”와 “공사시행자가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 계”와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”로 변경함. (안 제11조제1항)
- 사.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1조제2항 신설)
- 아. “공사를 시행한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3조제1항과 같은조제2항)
- 자.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변경함. (안 제14조의 제목과 제1항 )
- 차.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14조제3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- 다. 기타 : 신.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사업시행자”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
5. “이행 주체”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계약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9조제8항 중 “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, “정당한”을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

부분) 중 “공사시행자에게”를 “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”로, “공사시행자가”를 “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이행 주체의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사를 시행한 자”를 각각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)”을 “(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사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업시행자는 이행 주체에게 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<u>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"사업시행자"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5. <u>"이행 주체"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계약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① <u>사업시행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

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3조(원상회복 및 복구계획)  
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단,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

시행자 및 이행 주체-----  
-----.

②-----사업시행자-----  
-----  
-----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 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① -  
-----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 --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-----  
-----  
-----.

② 이행 주체의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할 수 있다.

제13조(원상회복 및 복구계획)  
① 사업시행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,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.

②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)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,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-----  
-----  
-----  
사업시행자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) ① 사업시행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사업시행자는 이행 주체에게 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,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조항 및 사업시행자의 이행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